

공지사항

1988년도 주요생활용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장지도 실시요령 공고

공업진흥청 공고 제88-150호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장지도 요령 제8조에
의거 88년도 주요 생활용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장
지도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년 2월 6일
공 업 진 흥 청 장

다음

1. 추진목적

- 세계일류화 상품수준으로 품질향상
- 품질향상을 통한 지속적 수출증대 도모
- 제품의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 2. 지도 및 지원내용
- 기술지도
 - 지도분야 : 설계, 생산, 품질관리, 계측관리, 디자인, 포장분야
 - 지도방법 : 필요시 전문지도기관과 협동지도 실시
- 관련기술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추진 지원

○ 행정지원

- 품질비교 평가를 통한 품질정보 제공
- 외국 품질인증 획득 지원
- 규격부품·소재 생산업체 지정 및 알선
- 관련검사기준 및 KS규격 조정

3. 지도비용

-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므로 업체부담 없음.
(단, 타기관과 연계지도시 실비 부담)

4. 지도기간 : 20일 이내

(공장설정에 따라 업체 실태조사후 결정)

5. 지도공장에 부여할 수 있는 특전

가. 지도기간 중의 특전

- 시설개체 및 보완에 필요한 자금지원 (국민투자 기금중 품질향상 자금) 알선
- 유망중소기업으로 추천
- 지도를 위한 부품·소재 및 원재료 시험 수수료 면제
- 시설의 검교정 수수료 면제

나. 지도완료 후의 특전

- 지도 후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면 판

매 및 홍보 우선 지원

- 우수국산품 상설전시관 우선 전시
- 당첨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시 공장심사 생략
- 6. 지도대상품목 : (별첨 1) 품목
- 7. 지도 신청기간 : 1988. 2. 8 ~ 2. 22
- 8. 지도신청서 : (별첨 2) 서식

(별첨 1)

주요생활용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대상품목

분야별	지도대상품목
전기·조명제품	휴대용전등, 백열전구, 형광램프, 조광기, 고압수은램프, 글로우스타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나트륨램프, 장식용조명기구, 누전차단기, 집어등, 자동차용전구, 휴대용전등용전구, 형광등용안정기, 휴즈류, 나트륨안정기, 수은등용안정기
음향·영상제품	TV안테나, 마이크, 보안경, TV부스터, 리듬박스, 헤드폰, 메가폰, 디지털TV, 액정TV, 슬라이드영사기, 스피커시스템, 차임밸, 이어폰, 인터폰
전자·복합제품	전자계산기, 전기공조기, 환풍기, 전기면도기,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전기소제기, 절연테이프, 연탄가스배출기, 전기제습기, 직류전원장치, 전기마사지기
전열기구	전기다리미, 자외선소독기, 모발건조기, 전기약탕기, 관상용히터, 전기스토브,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인두, 전기사우나바스, 전기온풍기
주방용품	전기냄비, 후드믹서, 전기제빙기, 멜라민식기, 주방용칼, 유리식기류, 고무장갑, 전기토스터, 내열유리냄비, 알루미늄냄비, 식기건조기, 보온병, 전기후라이팬, 보온도시락, 전기주전자, 전기쥬서, 전기찜통, 렌

공지사항

분야별	지도대상품목
	지후드, 김치통, 전기오븐, 팝콘포터, 가스렌지, 압력솥
건축자재	알루미늄샤시, LPG호스, 콘크리트못,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 볼탭, 사이폰, FRP욕조, 염화비닐판, 창호용호차, 정첩, 브라인더, 창문걸이쇠, 목재가구, 철재가구, 마블욕조
스포츠·레저	텐트, 골프공, 낚시용구, 등산용버너, 수경, 휴대용가스렌지, 골프크럽, 보울링공,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신변세화	망원경, 우산, 양산, 일회용면도기, 라이터
잡화제품	캐스터, 혈액계, 아이스박스, 자물쇠, 체중계, 석유난로, 가스난로, 가위, 가스순간온수기, 강제줄자, 작동완구, 침대, 지퍼, 주방용세정제, 온도계, 접착제, 접착테이프, 체온계, 프라이어, 톱, 서류가방, 족집개, 펜센트, 고무물주머니

〈별첨 2〉

공장지도신청서											
다음과 같이 공장지도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											
공업진흥청장 귀하	업체명:										
대표자: ⓧ											
1. 업체현황											
소재지	본사				전화						
공장										전화	
주생산품											
자본금		자산총액	원			증액원수	명				
2. 회망분야											
지도희망분야	월별지도일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회망지도위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4. 지도일수											
총지도일수	공업진흥청 지도일수			자기부담 지도일수							
○연락책임자 직위: 성명: 전화:											
○공장위치코드: 별첨											

HDTV 용어의 표준화

체신부에서는 차세대 TV인 HDTV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세계 시장성이 높아짐에 따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HDTV에 대한 韓·日 간 국제 공동실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바, 최근 HDTV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다양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HDTV의 의미와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선명 TV」로 표준화 하였으니 다음의 개요를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1988년 1월 30일
체신부장관

「고선명 TV」개요

1. 명칭의 다양성

○ 외국어명: HDTV (High Definition TV : CCITT 표준용어)

- 일본에서는 “하이비전”으로 명명
- 우리나라에서 혼용되고 있는 명칭
 - 고선명 TV
 - 고해상도 TV
 - 고품위 TV
 - 고선명도 TV
 - 고품질 TV
 - 고정밀도 TV
- 체신부 표준화명칭: 고선명 TV
- 2. 고선명 TV동향
- 개발 및 표준화 동향: 별표 참조
- 고선명 TV의 장점
 - 주사선수가 기존 TV의 약 2배가 되므로 주사선이 섬세하여 화면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음.
 - 가까이에서 봐도 화면이 거칠거나 흐리게 보이지 않도록 특수 설계되어 매우 선명한 화면이 재생됨.
 - 가까운 거리에서 대형화된 선명한 화면을 보게 되므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현장감과 박

공지사항

방식별 구분	일본방식(NHK)	미국방식(ATSC)	유럽방식(C-MAC)	기존방식(NTSC)
개발기관	NHK(일)	CBS(미)	IABA(영)	NTSC
주요재원				
- 주사선	1,125개	1,050개	1,250개	525개
- 화면의 종, 횡비	3 : 5.33	3 : 4	3 : 4	3 : 4
- 적정시청거리 (화면세로크기 기준)	약 3 배	약 3 배	약 3 배	약 7 배
- 전송대역	약 500 MHz (압축시 20MHz)	6 MHz	8.4 MHz	6 MHz
기존방식과 호환성	없음	NTSC방식과 호환성	PAL방식과 호환성	-
표준화 동향	- 일본방식으로 채택 - CCIR 표준규격 상정중	- 미국방식으로 채택 - CCIR 표준규격 상정중	- 유럽통일방식으로 채택 - CCIR 표준규격 상정중	-

진감이 넘침.

○ 200년대 세계시장 전망

- 산업분야 : 방송망, 방송위성 등 약 13조원 전망.
- 가전분야 : 수상기, 안테나 등 약 20조원 전망.
- 3. 韓·日간 고선명 TV 공동실험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최첨단 일본 고선명 TV 기술의 국내이전 추진
- 韓·日 공동협력에 의한 세계시장개척 및 표준화로 국내통신산업 육성 추진

○ 주요내용

- 실험시기 : 올림픽 개최기간중
- 전송로 구성
 - 올림픽주경기장-방송센터(IBC) : 광케이블 사용
 - 방송센터-일본 NHK간 : 국제통신위성 사용

○ 추진현황

- 공동실험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한 공동실무위원회 구성 추진
- 세부기술협력 및 공동실험 방법 실무 검토중

“간이 정액환급률표 대상품목 추가요청요령”을 참고하여 본회 부품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1월 2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대상품목 추가요청요령

1. 간이정액제도 개요

○ 수출면장 전당 미화 2만불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시된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면장의 제시만으로 동률표에 정해진 간이정액률에 의하여 매우 간편하게 환급해 주는 제도임..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동률표에 게시된 경우에는 적용되므로 거래빈도가 높은 기납증 발급시에 특히 유효한 것임.

○ 간이정액률표상의 대상품목은 간이정액방법이 우선이나 이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사전에 비적용 신청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음.

(추가품목에 대한 비적용 신청기간은 추후 결정)

2. 간이정액 대상품목 추가요청방법

가. 추가요청권한범위

○ 주로 소액거래형 수출품목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품종 다양 규격 중간원재료(기납증 발급대상 품목)

○ 대부분 유통단계가 많은 국 구입분 원재료

소액수출 간이 정액환급률표 대상품목 추가 요청 조사

본회 부품파에서는 '88. 1. 1부터 HS 세번제 도와 병행하여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간이 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제87-495호)에 대하여 대상품목을 추가하고자 원하는 업체에서는 첨부된

공지사항

(기납증 등)로 제조·가공된 수출물품

- 관세가 포함된 원재료에 대한 세액납부 증명
(기납증, 수입면장 분할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출품목
- 마. 신청자 및 제출처
- 신청자
 - 수출불품 또는 중간원재료를 주관하는 조합이나 협회
 - 수출업체 등의 개별적인 신청은 불인정
- 제출처
 - 관세청 환급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우편번호 135)
전화번호 : 542-8444, 542-7141(교260, 276)
- 다. 신청기간
'88. 2. 1 ~ '88. 2. 29까지

라. 신청서 양식

CCCN (8단위)	HS (10단위)	품명	희망업체수	HS단위별협회관할 총 업체 수

- * 희망업체는 '87년도 개별환급신청서(갑)지 1부 또는 기납증 1부를 첨부할 것.
- * 추가 품목은 HS세번 단위별로 기재하고 품명은 참고임.

마. 요청품목의 고시반영 여부

- 추가요청품목에 대하여는 당청의 CCCN 세번
별(신청업체의 해당여부불문) '86년도 내지
'87년도 개별환급 전산자료가 있을 때 채택이
가능함.
- 잔이정액률은 HS 세번별 개별환급실적을 기
초로 한 평균금액에 국내구입 대체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증명 금액으로 조정함.

기술신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요령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제82호

본회에서는 전자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소전자업체를 대상으로 공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금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적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소전자업체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기획총괄과(553-0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 2월 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기술 신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요령

제 1조(목적) 중소전자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줌으로써 동 업체가 원활한 신용보증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동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

제 2조(근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전자업체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기보 제611-371호 : '87년 12월 11일)

제 3조(대상) 기술신용 보증을 받아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전자업체

제 4조(신청) 이 요령 제 3조의 대상자가 본회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할 때에는 이 요령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검토사항) 본회는 이 요령 제 4조에 의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이 요령 제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 음

1.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

가.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수준 : 외국 및 국내개발기술 수준과 비교 평가

나.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 개발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성, 관련기술개발 파급효과, 생산성향상 또는 원가절감효과, 성능 및 품질향상효과, 에너지 및 절감 등의 성격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당해기업의 동기술개발 능력 평가

가. 당해기업의 개발능력 : 관련기술의 축적 정도, 개발비용조달능력, 시험연구기자재 확보실태, 개발인력확보 현황, 외국 또는 전문기술개발 기관 또는 업체와의 협력능력 등에 대해 평가.

나. 개발방법의 타당성 : 동사의 동기술 개발 계획의 합리성, 경제성을 검토.

3. 종합평가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와 당해 기업의 동기술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지사항

제 6 조 (검토요령) ① 본회는 신청인의 동기술개발 계획과 동사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전문연구기관, 관련학계 등의 자문을 받거나 시험의뢰를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합리적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검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 (검토처리기간) 본회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공휴일은 검토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취급부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는 정보산업부로 한다. 다만, 품목에 따라 협의 조정 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 9 조 (수수료) 이 요령에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받은 자는 신청전당 18만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본회에 지불해야 한다.

〈서식 1〉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신청서

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처음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신청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생산품목			설립년도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19 년	백만원
총 개발비용	백만원	용자액	백만원	
개발사업				
본사는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해 신용보증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2〉

1. 기업개황

기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	
주 생산품목			설립년도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19 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19 년 %	순익	19 년	백만원
주요개발기술		기술인력		명
		주요시험 제작시설		

2.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명 (개발기술)	개발 책임자	계 발 기 간	적 위 성 명
			전화
		개발기간	
개발방법		개발인력	
개발비용	백만원	지원액	백만원
개발효과	생산년 백만원		파급기술
	수출년 천불	천불	

3.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

가. 기술수준

- 외국(선진국, 경쟁국)의 개발 동향
- 국내개발 관련기술

나.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 관련제품의 시장성

- 세계시장

- 국내시장

- 관련기술의 파급효과

- 생산성향상 효과

- 원가절감 효과

- 품질 및 성능향상 효과

- 기타(성격화 등) 효과

다. 기술개발의 경제성(투입비에 대한 직접효과)

라. 기타 당해 기술개발의 중요성

4. 당해기업의 개발능력 및 개발방법의 타당성

가. 당해 기업의 개발능력

- 관련기술의 축적정도

- 개발비용 조달능력

- 시험·연구 기자재 확보

공지사항

- 개발인력의 확보
- 나. 개발방법의 타당성
- 5. 종합평가 의견

'88년도 특별외화대출 추천요령 공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6호

상공부 공고 제88-5호 ('88. 2. 8)에 의거 산업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원자재, 부품의 공급원활화를 위한 외화대출 및 내국수입 유산스(이하 특별외화대출이라 한다)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2월 8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음

1. 지원조건

가. 시설재(외화대출)

- 재원 : 외화대출
- 금리 : 현행 외화대출금리 (Libor + 1.5% 이내)
- 기간 : 10년 이내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나. 원자재 및 부품(내국수입 유산스)

- 재원 : 내국수입 유산스
- 금리 : 현행 내국수입 유산스 금리(B/A Rate + 2.0% 이내)
- 기간 : 90일 이내
- 용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현행 실행관세율 10% 이하 제한 배제

2. 지원대상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재

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공장자동화에 소요되는 시설재

다. 기초원자재, 부품 및 동품목의 공급확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에 소요되는 시설재

라. 기타 상공부장관이 산업발전을 위해 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재, 부품 및 원자재

3. 추천대상종 : 전자·전기제조업체

4. 신청서류

가. 특별외화대출 추천신청서 3부(별지 제1호서식)

나.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et) 사본 1부
- 다.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 1부
- 라. 기타 추천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 5. 추천기준
- 가. 2항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수출입 공고상 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다. 기타 추천에 필요한 사항
- 6. 추천유효기간
- 가.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단 동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추천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추천서 유효기간」이라 함은 응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금융기관에의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 7. 기타 :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특별외화대출(외화대출, 내국수입유산스)추천(신청)서

처 리 기 간				
2 일				
1. 수입자 상 호 :	2. 추천유효기간			
주 소 :	3. 수출입허가번호			
성 명 : (인) (선판 :)	4. 대출회당은행명 은행 지점			
6. HSK (10만위 CCCN별기)	5. 수입(통관)예정일자			
7. 증명 및 규격	8. 단위 및 수량	9. 가격조건 및 단가	10. 수 입 신 (신청자)	11. 금액(\$)
12. 위의 신청사항을 상공부 공고 제88-5호 및 수출입기밀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

추천일자 :

추 천 자 :

(인)

13. 심부서류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사본 1부

2801-9번
1987. 4. 28. 송인

190mm × 260mm · 1면 · 51g/m²

공지사항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 공고 제71호는 이를 폐지한다.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BNI)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안내

1988년 2월 1일, 서울-미국, EC 국가들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철폐와 더불어 수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요즈음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 1992년 유럽 공동시장의 단일화는 EC 지역에로의 한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은 한국 기업들에게 북아일랜드에의 투자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 주최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아일랜드만이 갖고 있는 우대적인 투자환경을 비디오, 슬라이드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며, 유망한 합작투자산업, 기존 투자기업들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섬유, 전자산업, 투자에 관한 개별 토론회를 갖는다. 또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 투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 대표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환영하고 있다.

일시 : 1988년 3월 3일(목요일) 2:00PM~

5:30 PM

장소 :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

세미나 내용 :

- 1부(3시간 30분) : - 투자환경 설명
- 합작희망업체 소개
- Case Study

- 2부(1시간 30분) : - 리셉션

주최 :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공동 주최

후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문의처 :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서울사무소

Tel. 777-1498, 752-5948

Korea Electronics Parts '88-'89(전자부품 총람) 원고 제출 의뢰

본회에서는 전자공업진흥의 일환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자부품총람을 발간코자

합니다.

동책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과 전기용품의 부품 및 소재를 사양 중심으로 게재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전자기기 업체에 국산부품 사용을 촉진하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 KOTRA 무역관, 해외전자전, 한국전자전 등에 널리 배포하여 '국산부품의 해외홍보 및 거래상담을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본회 회원사 중 부품업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본회 부품과)

1988년 2월 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목적

- 가. 전자부품을 수출주도산업으로 계속 육성
- 나. 국내외 전자기기업체에 국산부품 사용 확대로 수요증대

- 다. 설계기술자가 활용가능토록 상세한 SPEC 제공 등

2. 게재대상

- 가. 품목 : 전자제품 및 전기용품의 국산부품과 소재
- 나. 업체 : 전자제품 및 전기용품의 부품과 소재 제조업체

3. 원고제출

- 가. 원고접수 기간 : '88. 3. 12까지
- 나. 원고작성요령

- 모든 필름은 책자의 규격(19cm × 26cm)에 맞게 품목별 사양 중심으로 작성
- 문안은 영문으로 작성
- 외국 유명규격획득 내용 포함
- 원고매수 : 9면이하(단, 10면 이상일 경우 원색 광고제재)

- 다. 게재료 : 무료

- 라. 게재업체선정 : 신청접수순에 우선함.

- 마. 발간일자 : 1988. 5.

4. 광고제재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광 고 비	부 가 세	계
표 4	2,000,000	200,000	2,200,000
표 2	800,000	80,000	880,000
표 2 대면	600,000	60,000	660,000
표 3	500,000	50,000	550,000
표 3 대면	400,000	40,000	440,000
간 지	200,000	20,000	220,000

※ 모든 광고는 원색만 가능함.